

심리사법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3
----------	-------

발의연월일 : 2022. 4. 29.

발 의 자 : 서정숙 · 구자근 · 김미애
김승수 · 박수영 · 이종배
전주혜 · 조은희 · 조태용
최춘식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

1) 심리서비스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함.

2) 심리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3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함.

나. 심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함.

다. 심리사 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9조)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함.

라.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안 제10조)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련 심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심리사의 실무수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심리사협회의 설립(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심리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3.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이란 심리사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심리검사”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심리학적 측정 도구, 기기, 절차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측정하며 이를 기록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평가”란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적응수준 및 그 밖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상담/심리치료”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7. “심리재활”이란 심리적 장애의 고통과 불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돕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8. “심리교육”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문제 혹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심리자문”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10. “심리연구 및 개발”이란 심리건강 문제, 심리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심리서비스에 활용되는 도구나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함을 말한다.
- 제3조(심리사의 업무) 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심리 연구 및 개발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
- 제4조(심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심리사의 자격

- 제5조(심리사 자격) ① 심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②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과정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심리사의 전문영역) ① 심리사 중 전문영역을 표기하려는 자는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분야를 표기하지 못한다.

③ 전문영역 표기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표기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학품 중독자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심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교육인증평가소위원회

2. 실무수련인증평가소위원회

3. 자격관리심의소위원회

③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심리사의 등록과 개업

제9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5조에 따라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비치하는 심리사등록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제18조에 따른 한국심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심리사로서 그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한국심리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 ①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심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심리사, 심리사이었던 사람 또는 사무직원,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안조치 의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검사 및 관련 사항이 대중이나 공공에 노출되어 오용 및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나 교육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수교육)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련심리사) ① 수련 심리사는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 과목과 실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심리사의 책임 감독 하에 심리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련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 수련심리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심리

사는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있다.

③ 수련심리사는 제7조에 따른 심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심리사의 선발, 수련기간, 수련내용, 수련평가 및 탈락, 근로기준, 수련심리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심리사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직원) ① 심리사는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심리사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심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심리사협회

제18조(한국심리사협회) 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전문성 및 품위 유지, 심리사 직무 개선 및 향상 도모,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설립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협회의 가입의무) 제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심리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윤리규정) ① 협회는 그 회원인 심리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심리사 직업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직업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한 자
3.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한 자. 다만, 수련심리사로서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지도하에 심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2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분야를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에 한정하여 심리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회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존 자격의 인정 기준, 학문 분야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